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해 양 치 유 자 원 의 관 리 및 활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4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기준 및 지구 조성사업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안 제3조, 제4조)

- 1)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지역주민공청회의 사전 공고 의무와 지역계획 수립·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가 해수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 2)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가 매년 1월 31일까지 해수부장관에게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추진 실적 평가의 세부 기준,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1) 의료·복지·교육 시설 연계, 접근성 및 안전성 등 해양치유지구 지정 시 법률상 고려사항 외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구 지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
- 2) 사유 및 목적, 지구 및 주변지역의 권리현황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다. 해양치유지구 조성 사업시행자(안 제12조)

- 1) 지구 조성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한국관광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 2)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조성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종합공사 시공 업종 등 지구 조성사업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타당성조사(안 제15조)

- 1)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정함
- 2) 타당성조사 세부기준을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타당성으로 나누어 명확히 정함

마. 해양치유관리단(안 제19조, 제20조)

- 1)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할 경우 그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

기관 및 해수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 2) 전문성, 조직·인력, 관련 조사·연구·평가 실적 등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 기준을 정하고,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매년 해수부장
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안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종류를 정하고, 지정 및 해제 기준, 절차 등과
함께 지원 항목을 강사료, 수당, 교재 제작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으
로 규정

사. 연안·어촌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26조)

환경개선 등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
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어촌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1.11.17~12.31.) 결과 특기사항 없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계획 중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법 제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이용실적
2. 해양치유지구의 시설 조성 및 운영 실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해양치유지구 내 연안·어촌 주민 지원 실적

4.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활용 실적

5.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분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기준,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5조(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수행)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기관) 법 제8조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과의 연계계획
2.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관리 대책
3. 해양치유지구의 접근성 및 안전성
4. 지역주민의 호응도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
2.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해당 해양치유지구 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3. 해양치유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자료제출 및 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해양치유지구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해양치유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해양치유지구 지정·변경 고시)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변경의 근거법령
2. 해양치유지구 지정·변경의 사유 및 목적

3. 해양치유지구 지정·변경의 연월일
4. 해양치유지구 지정·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소유권, 어업권 등 권리 현황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해도를 포함한다)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치유지구 해제의 근거법령
2. 해양치유지구 해제의 사유
3. 해양치유지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해도를 포함한다)
5.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취소된 인가·허가등의 의제사항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조성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제13조(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동일인이 개명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

경(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2. 측량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해 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시행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 방향 및 목표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치유지구 내 사업수요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유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

계획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해양치유관리단이 사업시행자일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③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조성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전체 사업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이후에 다른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5. 측량착오, 도서(圖書) 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오염방지지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매수·보상 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사업의 명칭, 목적 및 개요

3.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해양치유지구가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해도를 포함한다)

제19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대상)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20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기준 및 운영) ①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치유산업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4.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치유관리단의 장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별 해양치유산업의 역량강화
2.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3. 해양치유산업 관련 국제협력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해양치유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
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24조(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해양치유서비스 기회 확대
2. 해양치유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3. 해양치유서비스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4. 해양치유서비스의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촌 지역주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해양치유자원의 개발 및 활용
2.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시설의 우선 설치

제25조(통계의 내용 및 자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계(이하, “해양치유통계”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시설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현황
2. 해양치유산업 및 관련 연구·개발 현황
3. 법 제27조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 및 수요전망
4. 그 밖에 통계작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해양치유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와 해양치유통계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연안·어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치유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해양치유지구 및 그 인접지역의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3.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치유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해양치유시설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지원사업 대상지역 및 내용·범위
3.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연안·어촌 주민의 우선고용) ① 해양치유시설사업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및 산업 통계의 작성·보급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

2. 「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5.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성계획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경제적 타당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가. 이용객 수요예측	수요예측을 통한 이용객 규모의 적정성	자료분석
나. 투자비 추정	총사업비, 운영비, 시설규모의 적정성	자료분석
다. 경제성 분석	편익·비용 분석, 순현재가치 분석, 내부수익률 분석, 민감도 분석	자료분석
라.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자료분석

비고: "민감도 분석"이란 하나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조성계획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타당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가.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자료분석
나. 사업의 실현가능성	1)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현황 및 확보계획 2) 사업추진 대상지의 일반현황 및 규제사항, 토지소유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주민수용성	자료분석
다. 해당 지역 자원의 활용성	1) 지역의 해양치유자원 현황 및 활용가능성 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 여부 3) 의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과의 연계 활용성	자료분석 현장조사
라.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관리 대책의 적절성	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할 대책 2)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해양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계획의 적정성 3)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계획 수립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마. 해양치유서비스의 편의성	1) 해양치유지구 운영 목적 및 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의 구비 여부 2)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인력배치계획 수립 여부(법 제9조제1항제2호의 해양치유지구에 관한 조성사업에 한정한다) 3) 해양치유지구 시설 및 이용객의 안전성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	--	-------------------------------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2조제5항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1.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은 교육과목별로 기본교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교육과목에는 해양치유자원, 해양치유 프로그램 기획·관리, 해양치유시설의 운영, 해양레저관광, 해양환경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의 과정별·연도별 교육계획과 세부 교육과목의 교육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고, 교육 이수시간은 해양치유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보급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시설	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및 실습실 2) 급수시설 3) 화장실 4) 조명시설 5) 냉방·난방시설 6) 소방시설 나.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당·회의실 2) 자료실

	3) 방송·통신시설 4) 보건시설
3. 강사 확보	가. 이론·실습 수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전문 강사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이론수업 강사: 수강생 30명 기준 1개 반에 1명 이상 2) 실습수업 강사: 수강생 30명 기준 1개 반에 1명 이상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1명 이상 나. 교수요원은 해양, 관광, 체육·스포츠, 보건·의료 등 해양치유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1) 해양치유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치유 관련 분야 자격 소지자 3) 해양치유 관련 분야의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4. 평가 및 운영	가. 이론 및 실습과목에 대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향후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은 자	법 제37조 제1항제1호	500만원	-	-
나.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7조 제1항제2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제31조에 따른 명령·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7조 제2항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라.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 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 제37조 제3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연 락 처	(044) 200 - 5251